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241340		
최초 등록일	2024.09.30	최종 등록일	2025.01.14

백두상회

정보공개서

[비디랩(주)]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7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4 조

제 1 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비디랩(주)

대 표 전 화 번 호	054-241-2211	대 표 팩 스 번 호	054-241-2214
가 맹 사 업 담 당 부 서	가맹사업본부	가 맹 부 서 전 화 번 호	054-241-2211
주 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해안로 189, 3 층(두호동)		
홈 페이지 주소	www.backtoin.com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III. 가맹본부 및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검토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http://f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 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 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 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 (<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중인 경우에는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 공개서를 제공받은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정 보 공 개 사 항

※ 본 정보공개서에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 : 가맹사업[비디랩(주)]의 “백두상회”)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자
- 귀하 : 당사와 백두상회 가맹계약 체결을 위하여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가맹희망자

I.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소			
비디랩(주)	백두상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해안로 189, 3 층(두호동)			
	법인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24.01.18	2024.2.5	허재훈	054-241-2211	054-241-2214
	법인등록번호	171711 -0186922	사업자등록번호		409-86-56307

2.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일반정보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상 호 / 이 름	대 표 자	대 표 번 호
가 맹 본 부	비디랩(주)	허재훈	054-241-2211
특수관계인 (임원)	허재훈(대표이사)	영 업 표 지 주 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해안로 189, 3 층 (두호동)
	김태복(사내이사) 김성광(사내이사) 이미경(감 사)		

3. 내·외국기업 여부

당사는 내국 기업으로서 외국에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4. 인수·합병 여부

당사는 정보공개서 바로 전 3 년간 다른 기업과 인수 합병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수·합병 여부	기업명	영업표지	인수·합병일	주 소	대표자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의 브랜드를 양수함	백두상회(신월성점)	백두상회	2024.10.03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원로 151, 1 층(월성동)	허재훈

5. 가맹희망자가 사용하게 될 영업표지에 관한 사항

귀하가 향후 영위할 백두상회의 명칭·상호·서비스표·광고 그 밖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브랜드 명	상호	서비스표 관련정보	BI
백두상회	백두상회 00 점 (해당 지역명 표기)	해당없음	백 두 상 회

6. 가맹본부의 바로 전 3 개 사업연도의 재무현황

1) 당사의 정보공개 바로 전 3 개 사업연도의 재무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총자산	총부채	총자본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년	당사는 2024 년에 설립한 신규 사업자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22년						
2023년						

2) 당사의 정보공개 바로 전 3 개 사업연도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해당 없습니다.

7.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현 임원의 명단 및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 년 동안의 개인별 사업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성 명	직 위	개인별 사업경력		
			사업기간	사업내용	담당업무
가맹사업 관련 임원	허재훈	대표이사(CEO)	2024.01.18~현재	비디랩주	경영전반
		대표	2023.1.1~현재	백두상회(신월성점)	경영전반
	김태복	사내이사(CPO)	2024.01.18~현재	비디랩주	경영일반
	김성광	사내이사(CSO)	2024.01.18~현재	비디랩주	경영일반

	이미경	감사	2024.01.18~현재	비디랩(주)	감사
--	-----	----	---------------	--------	----

8. 바로 전 가맹본부의 임직원 수

당사는 2024 년에 개업한 신규사업자로 정보공개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 준 시 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3 년 12 월 31 일	0	0	0

9.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백두상회 가맹사업 외의 가맹 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는 사실이 없습니다.

10.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귀하가 당사의 백두상회 가맹점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귀하에게 부여할 수 있는 상표·
실용신안·특허 등의 출원된 지식재산권이 없습니다.

Ⅱ.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 당사는 백두상회(신월성점)으로부터 2024.10.03 에 백두상회 가맹사업을 양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 당사는 백두상회(신월성점)와 계약한 기존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다시 체결하거나 승인을 얻고 있는 중입니다.
- * Ⅱ-1, 4, 5, 7, 8 에 기재된 사항은 양도인 백두상회(신월성점)의 자료입니다.

1. 가맹사업 시작일

당사의 백두상회 가맹사업은 시작 예정이며, 직영점 시작일은 2023 년 1 월 1 일입니다.

2. 백두상회의 연혁

백두상회 연혁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 호	영업표지	대표자	가맹사업 경영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백두상회(신월성점)	백두상회	허재훈	가맹사업 시작예정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원로 151, 1 층(월성동)
비디랩(주) (브랜드양수도)	백두상회	허재훈	2024.10.03 ~가맹사업 시작예정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해안로 189, 3 층(두호동)

3. 백두상회의 업종

백두상회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표지	업종	
백두상회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농수산물	과일, 야채, 수산물, 기타잡화

4. 바로 전 3 개 사업연도 말 백두상회의 가맹점 및 직영점 현황

당사의 정보공개 바로 전 3 개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백두상회의 전국 및 광역지방자치 단체별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개)

지역	2021년 12월 31일			2022년 12월 31일			2023년 12월 31일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1	0	1

서울	가맹사업 미개시로 해당사항 없음	0	0	0
인천		0	0	0
부산		0	0	0
대구		1	0	1
광주		0	0	0
대전		0	0	0
울산		0	0	0
경기		0	0	0
강원		0	0	0
충북		0	0	0
충남		0	0	0
전북		0	0	0
전남		0	0	0
경북		0	0	0
경남		0	0	0
제주		0	0	0
세종		0	0	0

5. 바로 전 3 개 사업연도 말 백두상회의 가맹점수 변동 현황

백두상회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정보공개 바로 전 3 년간 신규개점·계약종료·계약해지·명의변경한 가맹점의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개)

시점	연초	신규개점	계약종료	계약해지	명의변경	연말
2021년	가맹사업 미개시로 해당사항 없음					
2022년						
2023년						

6. 기타 가맹사업현황

백두상회 가맹사업 외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가맹사업은 없습니다.

7. 바로 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과 그 산정 기준

백두상회 가맹사업은 시작 예정이므로 정보공개 바로 전 사업연도에는 가맹점사업자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2023 년말 가맹점수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단위:천원,VAT미포함)						산출 가맹점수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당	상한	면적 3.3㎡당	하한	면적 3.3㎡당	
전체	0	사업 미개시로 해당사항 없음						0

서울	0		0
인천	0		0
부산	0		0
대구	0		0
광주	0		0
대전	0		0
울산	0		0
경기	0		0
강원	0		0
충북	0		0
충남	0		0
전북	0		0
전남	0		0
경북	0		0
경남	0		0
제주	0		0
세종	0		0

8. 백두상회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백두상회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년	사업 미개시로 해당사항 없음	

9. 가맹지역본부(지사를 포함한다) 현황

당사는 백두상회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지역본부를 운영하지 않으며, 당사에서 모든 가맹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0. 바로 전 사업연도의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는 2024 년에 설립한 신규사업자로 정보공개일 바로 전 사업연도의 당사가 연간 광고 및 판촉비로 사용한 내역은 없습니다.

11. 가맹금 예치 기관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가맹금을 예치하여야 하는 기관의 상호, 예치업무 담당 부서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명	취급지점명	주 소	전화번호
우리은행	대구테크노폴리스지점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테크노상업로 108	053-614-0621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 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 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 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 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 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주)서울보증보험과 피해보상보험 계약 체결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내용	비고
보험상품명	프랜차이즈보증보험	
보험인(보험회사)	(주)서울보증보험	
보험계약자	비디랩(주)	
피보험인(보험금수령인)	가맹점사업자	
보험범위	예치금액	
보험기간	가맹금 예치기간(가맹계약체결일로부터 2 개월이 경과한 날 또는 가맹점사업자 영업개시일까지)	
보장범위	가맹점사업자의 피해액 일부 보장	
지급조건	가맹본부의 가맹금 반환의무 불이행	
보험금 수령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보험금 청구 → 보험회사 접수 → 보험회사 조사 → 지급여부결정 → 보험금 지급	

Ⅲ. 가맹본부 및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당사 및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 및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 횡령. 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 및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 횡령. 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백두상회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부담이 필요 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최초 가맹금

가) 귀하(신규 가입자)가 당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최초 가맹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내 역	금액(단위:원) (VAT 포함)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가맹비	1. 가입비 2. 최초 가맹점 오픈을 위한 정보·자료 제공 대가 3. 최초 가맹점 오픈을 위한 인력지원의 대가	3,300,000	가맹점 오픈 이후 반환 안됨. 단, 오픈 전 해약 시 위약금과 상계처리 후 반환	가맹점 오픈을 위하여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교육비	개점 전 교육비 (점주1인 및 기타1인)	2,200,000	교육 이후 반환 안됨. 단, 오픈 및 교육 전 해약 시 위약금과 상계처리 후 반환	교육을 위해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 상기 개점 전 교육에 대하여 최대 인원(2인) 이외에 추가 인원의 교육을 원할 경우

1인당 금일백일십만원(₩1,100,000)(VAT 포함)의 교육비를 추가로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 귀하(기존 가맹점 양수자)가 당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최초 가맹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내 역	금액(단위:원) (VAT 포함)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양수 가맹비	1. 양수 가맹점 운영을 위한 정보·자료 제공의 대가 2. 양수 가맹점 오픈을 위한 인력지원의 대가	1,650,000	가맹점 영업시작 이후 반환 안됨. 단, 오픈 전 해약 시 위약금과 상계처리 후 반환	가맹점 오픈을 위하여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교육비	양수 개점 교육비	2,200,000	교육 이후 반환 안됨. 단, 오픈 및 교육 전 해약 시 위약금과 상계처리 후 반환	교육을 위해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2) 보증금

귀하(가맹점 양수자 포함)가 당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보증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내 역	금액(단위:원) (VAT 해당없음)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계약이행 보증금 (보증증권으로 대체 가능)	가맹계약 상의 이행 및 채무 또는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금액	10,000,000	계약 종료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잔존 채무와 손해배상액을 정산 후 반환	미납 채무가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3) 예치 가맹금의 범위

귀하 또는 가맹점 양수자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금액(단위:원/VAT 포함)	
합 계	신규 가입자	기존 가맹점 양수자
	15,500,000	13,850,000
가맹비	3,300,000	1,650,000
교육비	2,200,000	2,200,000
계약이행보증금	10,000,000	10,000,000

*계약이행보증금은 VAT 해당없습니다.

4) 최초 가맹금 이외에 가맹사업 개시를 위해 필요한 다른 비용의 추정치

귀하(신규가입자)가 그 밖에 백두상회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기존 가맹점 양수자의 경우 아래의 품목 중 당사와 협의하여 필요한 품목이 있을 경우 이를 구입하여야 합니다.

(기준면적: 50m² /단위:원/VAT 포함)

품목	지급대상	금액	3.3 m ² 당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인테리어 (점포 내장공사)	비디랩㈜	17,600,000	약 1,174,000	가맹 계약시 개별 계약	공사 전 계약취소
간판 및 사인물	비디랩㈜	2,750,000	약184,000		공사 전 계약취소
진열대 및 POS 등	비디랩㈜	6,050,000	약404,000		설치 전 계약취소
저온저장시설 등	비디랩㈜	4,400,000	약294,000		설치 전 계약취소
가격표 칠판	비디랩㈜	550,000	약37,000		설치 전 계약취소
오픈행사 및 기타집기 등	비디랩㈜	6,820,000	약455,000		설치 전 계약취소
합 계	-	38,170,000	약 2,545,000	-	-
가맹점사업자 직접시공 및 물품구입시 검수비: 3.3m ² 당 220,000원(VAT포함)					

- ① 상기 3.3㎡당 금액은 기준면적을 3.3㎡로 나눈 금액을 기재한 것일 뿐 실제 크기에 따라 정률로 금액이 가감되지는 않습니다.
 - ②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50㎡, 15 평 기준)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③ 별도사항
건물 개보수공사, 철거공사, 전기승압 및 분전함, 가스가설공사, 상하수도 공사, 닥트(입상,급기)공사, 소방설비, 화장실, 냉난방기, 음향기기, 각종 인허가
 - ④ 상기 비용 이외에 설비의 품질, 선택사항에 대한 추가 및 점포 건물에 따른 냉난방기, 철거, 가스설비, 전기승압, 통신설비, 소방시설공사, 화장실공사, 외부 상하수도공사, 어닝, 외장공사, 인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소요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⑤ 자세한 비용은 계약체결 시 매장실측 후 별도로 제공안내하고 있습니다.
 - ⑥ 지급대상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귀하의 가맹점 면적 즉, 가맹점 매장(상품을 전시하고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의 면적은 66 ㎡이하로 제한합니다. 단, 초과하는 면적에 대하여 칸막이 등으로 확실한 경계를 구분하거나 경계구분 후 저온창고시설 및 세척실 등 공간은 제외합니다.

5) 가맹계약 체결 및 당사 금전 지급 후 해약 시 위약금

귀하가 당사에 금전을 지급하거나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둘 중 빠른 시점) 귀하의 귀책사유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귀하의 점포가 개업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일반적인 변심에 의하여 가맹점 개점 전 해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귀하가 당사에 지급한 금액 중 반환되어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의 위약금 규정을 따라 상계처리 후 반환되며, 부족분에 대하여는 해약 후 즉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약 요청 일자	위약금
계약 체결과 금전 지급 중 빠른 날로부터 24시간 이내	정보공개서상의 예치대상금액의 10%
계약 체결과 금전 지급 중 빠른 날로부터 24시간 후 5일 이내	정보공개서상의 예치대상금액의 30%
계약 체결과 금전 지급 중 빠른 날로부터 6일 이후부터 가맹점 개점 이전까지	정보공개서상의 예치대상금액의 50%

*상기 표에 따른 위약금 이외에 가맹점의 개점을 위하여 당사 또는 협력업체가 물품의 구입, 인테리어 및 설비 등의 공사를 진행한 경우 당사 또는 협력업체는 귀하에게 그 진행 정도에 따라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귀하의 귀책으로 본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 당사가 귀하에게 지원한 금액이나 물품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귀하는 해당 지원금 등을 잔여기간에 따라 당사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당사가 가맹점 오픈시 지원하는 내역은, 최초 계약기간 유지를 전제로 제공하는 것이므로, 만일 귀하의 사정으로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 귀하는 남은 잔여기간에 대한 지원금을 당사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6) 가맹점 입지 선정의 주체 및 선정기준

백두상회 가맹점 입지선정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지선정의 주체	입지 선정의 기준
가맹희망자	1) 가맹희망자가 자신의 책임 하에 점포의 입지를 선정합니다. 2) 가맹희망자의 입지선정에 당사는 해당 지역의 행정구역상의 구분, 시장의 특성, 주요한 근린시설, 업종특성에 따른 매출성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점포의 실사를 통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가 조언한 경우라도 매출/임차료 등에 대한 적합성과 해당입지가 법적/구조적으로 가능한지 등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권은 가맹희망자에게 있으며, 당사는 매출 및 영업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하지 않습니다.

7)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채용 및 교육에 대한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을 것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만 19 세 이상일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만 18 세 이상일 것

8)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장비, 정착물 등의 물품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에 관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자세한 내역은 계약체결 시 매장실측 후 별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9) 금전 지급방법

귀하가 당사에 지급해야 할 금액의 지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기존 가맹점 양수인의 경우에는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구분		기준 금액(단위:원/VAT 포함)		지급시기
예치 가맹금 (계약금)	-	신규 가입자	기존 가맹점 양수자	가맹계약 체결 즉시
	가맹비+교육비	5,500,000	13,850,000	
	계약이행보증금	10,000,000		

	->증권대체			
예치가맹금 이외의 창업비용	중도금	19,085,000	-	인테리어 공사 전 계약금 50%
	잔금	19,085,000	-	초도입고 3일 전 잔금 50%

*금전 지급 방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가맹점 오픈 이후 지급해야 하는 정기 또는 부정기 지급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원/VAT 포함)

구 분	내 역	지급 대상자	금액 또는 산정기준	지급 기한	반환여부 및 반환조건
개점 이후 교육비	수시 교육	가맹 본부	기본 교육 무료, 특수 사항은 실비 청구	개별 청구	실비로 반환 안됨
	특별 교육	가맹 본부	개별 교육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와 협약하여 산정 서비스교육의 교육비는 가맹점사업자가 부담		가맹점사업자가 의뢰하여 개별적으로 실시될 경우에 실비로 청구되기 때문에 반환 되지 않음
	재교육	가맹 본부	일정 자격 미달 가맹점에 실시되는 교육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협약		교육 실시 후 반환 되지 않음
판촉 분담비	판촉	가맹 본부	공동 판촉 시 기획 비용은 당사 부담이며 판촉물 제작 비용은 가맹점사업자 부담임. 그 밖의 판촉비용의 부담은 협약하여 결정		판촉 활동 실시 후 반환 되지 않음
광고 분담비	전국 또는 지역 단위로 시행되는 공동 광고	가맹 본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에게 일부 부담(가맹본부 50%, 가맹점사업자 측 50% 분담 원칙) 될 수 있음		광고 활동 실시 후 반환되지 않음
모바일 상품권	해당 없음				

POS 사용료	POS 사용대가	포스 닷컴	월 사용료 _____ 원 (자세한 금액은 업체와의 계약에 따름)	매월 _____ 일	후불로 반환되지 않음
점포 환경 개선 비용	간판교체, 인테리어 (장비, 집기의 교체비용 제외한 실내건축공사)	꾸밈, 영진 광고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비용 20%를 제외한 나머지	개별 청구	Ⅶ-1 참조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비용 40%를 제외한 나머지		
지연 이자	금전지급의무의 지급기한 경과시 지연이자	가맹 본부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급 (물품대금 지연이자 15%)		금전지급의무 또는 본 계약의 위반으로 부담하는 금전지급의무의 지급기한을 경과했을 시 부담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직전 사업연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기준:2023년)	내용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가맹사업 미개시로 해당사항없음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가맹사업 미개시로 해당사항없음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회계처리·재고관리 감독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위생, 재고관리 등을 포함한 점포 경영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가맹점사업자의 점포를 점검하고 기준에 위반하는 결과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 항목	내용	시기	비고
상품 및 재고관리	가맹점사업자의 상품 및 재고상품의 보관상태 등 점검	1회 /2주일	점포유형 및 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각종 설비관리	가맹점사업자의 각종 설비관리 상태 점검		
접객 및 교육상태	직원 복장 및 위생상태, 고객응대방법 점검		
회계처리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에 대한 회계조사		
기타	가맹본부의 운영지침 등 준수여부 점검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영업과 관련하여 영업장부, POS, ERP시스템, 회계장부(이하 '회계자료'라 한다)를 성실히 작성·유지하여야 하며,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을 파악할 수 있도록 확인 가능한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품 구입과 판매에 관한 회계자료 등 당사의 통

일적 사업경영 및 판매 전략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보관하고 당사의 청구가 있으면 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한 자료의 확인과 기록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의 전산 매출정보수집, 당사의 직원이 점포에 출입하여 조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점포이전시 부담에 관한 내용

가맹점사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기간 중에 임의로 점포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90일 전에 당사에게 점포이전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당사는 승인하기로 합니다. 점포이전시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에게 점포개발 등의 컨설팅비용(점포이전당시 비용을 요청함) 지급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임의로 점포를 이전한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 지급해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통일적 이미지 관리나 시장구조의 변화 등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 및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으로 점포이전, 노후시설의 보수 혹은 교체, 상품 및 판매가 조정 등을 계약 갱신이나 재계약의 조건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한 계약 등의 종료 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양수한 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자와 가맹계약체결 의사가 없을 경우 기존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가맹계약을 종료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사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수령한 가맹금 중 이행 의무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을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해지와 함께 당사의 귀책 정도에 따라 가맹금 중 미 이행 부분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사용을 허락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이를 가맹점사업자가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가맹점사업자는 변경된 영업표지를 사용하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가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사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수령한 가맹금 중 이행 의무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을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해지와 함께 당사의 귀책 정도에 따라 가맹금 중 미 이행 부분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 당사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한 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사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수령한 가맹금 중 이행의무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을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해지와 함께 당사의 귀책 정도에 따라 가맹금 중 미 이행 부분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양도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가맹점사업자는 정보공개서 상의 양수가맹비,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 등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점사업자와 당사와의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호·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 [백두상회] 브랜드임을 알 수 있는 어떠한 식별기호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또한,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등 업무 관련 자산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영업 관련 자산에는 전산장치에 저장된 자료도 포함됩니다.

가) 물품공급대금, 손해배상금 등 모든 금전채무의 즉시 상환

나) [백두상회] 브랜드를 표시하는 모든 공작물, 건물 내외 장식, 간판 등의 상징물의 제거 및 기타 방법에 의하여 [백두상회]의 가맹점으로 오인받을 수 있는 행위의 금지

다) 당사의 운영매뉴얼, 규정집, 지침 등의 자료 반환

라) 당사의 소유물, 무상으로 제공한 물품의 반환

마) 계약 유효기간 및 종결 후 경쟁관계에 있는 자에게 영업내용이나 고객에 대한 정보를 넘겨주는 행위 또는 당사에 대한 신용을 해치거나 비방하는 행위의 금지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와 백두상회 가맹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당사로부터 부여받았던 가맹점운영권이 만료되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가)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에 사용 허가를 받은 영업표지가 인쇄된 간판 및 기타 표시물을 즉시 철거하여야 하며, 당사가 제공한 설비, 기기, 전산시스템 등의 영업 관련 유형자산은 즉시, 당사에 반환하고 운영매뉴얼 기타 가맹점 운영규칙 등은 즉시 폐기(파일 등의 삭제포함)하거나 당사에 반납하여야 한다. 이때 철거 비용은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가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종료되는 경우 외에는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합니다.

나) 본 계약이 기간만료나 해지로 종료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 종료 15일 전까지 당사가

제공한 설비, 기기, 전산시스템 등 영업 관련 자산 및 운영매뉴얼 기타 가맹점 운영 규칙 등 당사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할 각종 유형/무형의 물품 목록을 작성하여 당사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무형의 물품에는 전산장치에 저장된 자료도 포함됩니다.

- 다) 위의 나)에 따라 당사는 제출받은 목록의 적정성 유무를 판단할 실사를 계약 종료 직전 시점에 실시할 수 있으며, 가맹점사업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실사작업의 범위에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장소에 비치된 전산장치에 저장된 내용에 대한 검색권한도 포함됩니다.
- 라) 가맹점사업자는 위의 가) 내지 다)의 계약의 종료와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점포를 폐점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사전에 당사에게 폐점에 대한 통보를 한 후 당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마) 가맹점사업자는 당사로부터 사용 허가를 얻어 사용하던 상호, 간판, 기타 표시물 등을 변형하여 당사가 소유하고 있는 상표권의 권리범위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바) 가맹점사업자가 본 계약의 종료 이후에도 계속하여 당사의 영업표지, 운영기법 등 기타 가맹점 운영규칙 등을 사용할 경우 무단 지적재산권 사용 행위에 해당되며, 가맹점사업자는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집니다.
- 사)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유효기간 동안이나 종결 후에도 경쟁 관계에 있는 자에게 영업내용이나 고객에 대한 정보를 넘겨주는 행위 또는 당사에 대한 신용을 해치거나 비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유심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백두상회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부재료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① 개점 이후에도 추가품목 구입시 강제/권장 기준에 따라 물품을 구입하여야 합니다.
- ② 거래상대방 및 상기 세부 품목 내역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③ 귀하가 위 표의 거래형태에 강제로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소매업에 해당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 조 제 1 항 관련 별표 1 에 따라 자세한 세부내용의 기재를 생략합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관련 별표1에 따라 기재를 생략합니다.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백두상회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명칭	관계	경제적 이익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명칭	경제적 이익의 내용	비고
해당사항 없음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백두상회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직전 사업연도에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금액	비고
가맹사업 미개시로 해당사항 없음					

2) 당사가 백두상회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직전 사업연도에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관계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금액	비고
가맹사업 미개시로 해당사항 없음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는 백두상회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서비스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당사로부터 승인된 상품이나 서비스만을 고객에게 판매하도록 하고 있으며 귀하는 당사의 허락 없이 다른 상품·용역을 판매하여서는 안됩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	-----------	--------	----

과일류 야채류 수산물 축산물 기타 잡화 등 당사가 지정한 상품	왼쪽에 기재된 상품 이외 승인받지 않은 상품은 판매할 수 없음	1 회 시정요구 후 가맹점운영권제한 또는 2 회 서면시정 요구 후 계약 해지	가맹사업법의 해지 절차 준용
--	---	--	--------------------

귀하가 승인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를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귀하는 신규상품 출시, 서비스 기법의 변동에 따라 변경된 관련 상품(기물 및 용기 등 포함)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하며, 당사가 영업활성화 또는 브랜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새롭게 개발한 상품 및 운영방식에 대하여 당사가 공지한 경우 귀하는 반드시 사용적용하여야 합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상기 표에 기재된 상품 이외에도 가맹사업의 개선, 고객니즈의 변화, 경쟁업체의 출현, 시장변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가맹사업 전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으로 기존 상품의 변경 또는 추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하며, 가맹본부가 지정한 상품을 판매하여야 합니다.

귀하는 귀하의 매장에서만 영업하여야 하며, 그 외의 장소에서 분점 형태로 영업할 수 없습니다. 만일, 부득이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또한, 당사에게서 구입한 물품을 경쟁사, 인터넷, 홈쇼핑, 카탈로그, 온라인 공동구매, B2B, 다단계 판매 및 기타 통신판매 등 직접판매 및 재판매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ex)본부에서 제공하는 행사상품을 정가가로 판매하는 행위 또는, 경쟁사 등에 행사가에 버금가는 가격으로 재판매하는 행위 등. 다만, 판촉을 위해 활용하는 인터넷 등의 홍보 활동은 당사와 협의 후에 결정합니다.

2) 거래상대방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을 고객판매 용도 외 타 가맹점에 공급하거나 가맹본부와 경쟁관계에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시장상황이나 소비자의 동향 또는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소비자 판매가를 정하여 권장할 수 있습니다(특히, 행사상품 판매가의 강제 등) 단, 면세품목 중 과일, 채소, 수산물을 제외한 상품은 당사가 지정하는 가격으로 판매하여야 합니다. 또한 당사가 귀하에게 판매이윤율(판매가격의 20%)내에 판매가를 권장할 수 있습니다. 단, 당사는 필요에 따라 귀하가 판매하는 가격의 이윤상한율을 정할 수 있으며 귀하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당일 “떨이판매” 등의 간이행사에서의 “덤” 형식의 상품 제공 등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규정없음).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권장가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에게 그 취지와 내역을 문서로 통보하여 당사와 사전 협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와의 협의와 점포의 위치 및 규모에 따라 상품·용역의 종류와 가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영업지역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 조의 4 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과일 및 야채 등 신선품(생물, 냉동 등)을 판매하는 업종	백두상회	해당없음

2)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기준	설정방법
가맹점 중앙을 기준으로 직경 1km (단, 특수상권은 제외)	별지에 영업지역을 지도로 표시

*특수상권이란, 역세권(각 출구), 아파트(1,000세대)단지, 백화점, 대형마트, 대형쇼핑몰, 종합병원, 대학, 놀이공원, 극장, 푸드코트, 시장, 지하상가, 지하철역사내 상가, 공항, 호텔 등에 상응하는 별도의 독립상권으로 구분하는 지역을 의미하며, 별도의 상권으로 정하고, 해당 별도의 상권과 인근 기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를 한 경우에 대해서는 가맹점의 영업지역 내에 추가로 가맹점 및 직영점 개설이 가능하며,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의 영업노력이 손상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인근 가맹점과 충분한 합의를 거친다.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 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가) 귀하는 가맹계약서 제6항의 영업지역 지도에 명시되어 있는 독점권역 지역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으며, 타 가맹점사업자의 독점권역 영업지역을 침범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타 가맹점사업자의 독점권역 영업지역에 대한 타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하여 귀하가 책임을 지도록 합니다. 단, 귀하의 독점권역 영업 지역을 넘어서는 지역에 대하여 다른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이 없는 경우에는 영업권역 외 영업을 허용합니다.

나) 귀하의 영업지역 영업에 대하여 플랫폼(온라인몰: 백두인)에 따라 영업하는 권역은 영역이 없습니다. 단, 플랫폼을 통한 미리장보기 서비스 또는 픽업서비스와 그 외 당사가 지정하는 서비스 등은 제외합니다.

다) 귀하는 가맹계약서 제6항의 영업권역 지도에 설정된 영업지역에서는 자유롭게 영업 및 홍보가 가능하며,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당사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영업 및 홍보가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가맹점이 개설된 경우에는 즉시 영업 및 홍보를 중단하여야 합니다.

라) 귀하는 점포의 영업에 사용하고 있는 모든 플랫폼(배송서비스플랫폼 포함)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당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즉시 당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백두상회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라)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는 온라인몰 백두인을 통해 당사가 지정한 상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마)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해당 브랜드의 국내 판매 매출액 중 온라인,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0	100	0	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해당 브랜드의 전체 상품 수 중 가맹점 전용상품 수의 비중 및 온라인 전용상품 수의 비중

(단위: %)

연도	가맹점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0	0

* 상기 정보는 양도인 백두상회(신월성점)의 자료입니다.

6. 계약의 기간, 갱신, 종료 및 수정, 해지 등

1) 가맹계약기간

백두상회의 가맹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 년이며, 갱신(재계약) 기간도 2 년으로 합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최대 10 년의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당사에게 정당한 사유(갱신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 재계약 또는 계약 연장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1.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2. 다.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3.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4.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15일 이내
5.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6.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7.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8.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2년으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2년으로 가맹계약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 (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3) 계약 갱신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가맹점사업자가 다음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조건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입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당사 또는 협력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채무의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	7조 2항 각호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4) 계약종료,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가) 당사는 아래와 같은 계약 해지 사유 발생 시,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며, 이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시정이 없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가맹점사업자가 점포의 규모·대표자 등의 가맹점의 표시에 해당하는 사항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3조 2항~3항	25조 각호 및 31조 1항 1호
가맹점사업자가 당사가 허용한 영업표지의 사용범위 외에 서면 동의 없이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4조 3항	
가맹점사업자가 당사가 보유한 영업표지를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양도한 경우	4조 4항	
가맹점사업자의 개점 전 교육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9조	
가맹점사업자가 공급품대금 및 기타 대금의 약정한 납입기일을 2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1년안에 2회이상 연체한 경우	15조	
가맹점사업자가 개점 이후 교육에 참석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16조	
가맹점사업자가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여 당사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17조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제3자 명의로 경업 및 겸업금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18조	
가맹점사업자가 관리감독 기준에 의한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20조 1항	
가맹점사업자가 거래처 구입강제품목을 지정된 업체로부터 구입하지 않거나 판매제품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품질요구품목 미사용으로 인해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저해하는 경우	21조1항~4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사전협의 없이 가격을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21조 6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에 대하여 가맹점 판매 용도 이외로 사용할 경우	22조 10항~12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승인받지 않고서 지정거래처품목을 자점매입하거나 품질검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는 경우	23조	
가맹점사업자 및 매장근무자가 복장 규정을 위반하거나 영업시간 규정이나 인력운영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26조	
가맹점사업자가 노후화 또는 위생·안전의 결함으로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시설 등의 교체·설치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27조 2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승인 없이 가맹점 설비를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27조 7항	
가맹점사업자가 회계자료 통지 등의 통지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28조	
가맹점사업자가 공동으로 시행되는 광고의 광고비 분담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는 경우	29조	
가맹점사업자가 공동으로 시행되는 판촉활동에 정당한 이유없이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	30조 5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승인 없이 판촉물 등을 제작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이미지를 훼손하는 경우	30조 8항	
가맹점사업자가 사전 승인 없이 양도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35조 1항	
가맹점사업자가 임의로 점포를 이전한 경우	36조 1항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권역의 규정을 3회이상 위반하는 경우	45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간 과경쟁을 유발하는 언행이나 가격경쟁을 유발하는 경우	25조 23호	
가맹점사업자의 가맹점 임차권이 종료된 경우	25조 24호	
가맹점사업자가 고객들로부터 동일한 불만사항을 접수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인해 "갑"의 가맹점에 대한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25조 25호	
기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내용 및 별도 약정한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25조 26호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의 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이 지나도록 정상적인 영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이에 따른 금전 채무지급에 관하여 가맹점사업자가 별도 약정한 날짜를 지키지 않는 경우	31조 1항 2호	

나) 당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즉시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①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②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③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31조 4항 각호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가맹점사업자가 약정해지 사유 위반으로 당사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가맹계약해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된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다) 당사 및 가맹점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즉시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즉시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31 조 3 항 각호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수표가 부도 처리되거나 강제집행을 당하는 경우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라) 가맹점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그 사실을 당사에 통지하고 1 개월이 지나도 시정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부여한 영업지역에 부당하게 직영점 또는 가맹점을 설치하는 경우	31조 2항 각호
당사가 가맹점운영에 필요한 상품에 대하여 부당하게 공급을 거절하는 경우	
당사가 가맹사업의 성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을 경우	

마) 그밖에 가맹점사업자가 위에 해당하는 해지사유 이외에 가맹점사업자 본인의 사정에 의하여 가맹점사업자가 본 계약을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최소 90 일 전에 당사에 계약 해지의 내용을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하며, 당사가 제시하는 합의 해지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계약 수정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귀하와의 상호 합의하에 계약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 수정 사유
가맹사업법의 개정 또는 기타 식품 관련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의 경우
가맹사업의 통일화를 위한 영업방침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당사의 합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통지) → 가맹본부 인지 및 검토 → 수정 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 동의 → 계약서 작성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가 동의하는 경우 양 당사자가 합의를 작성한 날 또는 수정된 계약서에 기명날인하여 (재)계약을 체결하는 날로부터 효력 발생

계약 갱신 시 변경내용이 있을 경우, 계약기간 만료 180 일에서 90 일 사이에 계약의 변경 조건을 통지하고 재 계약 여부를 묻게 됩니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등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및 상속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 잔여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1개월 소요) → 승인 여부 통지→양도 기간에 대한 양수 또는 신규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15일 소요)→가맹점운영권 이	가맹점사업자가 2개월 전에 서면으로 양도 신청→정보공개서 제공→당
가맹계약 조건	전 완료

- ① 양수인은 잔여계약 기간에 대하여 가맹점운영권이 인정되며, 양수에 따른 교육이수 및 정보공개서상의 양수인의 부담비용(정보공개서상의 양수가맹비,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 등 부담비용)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② 양수인이 원할 경우 신규가입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직계존비속의 영업 상속의 경우에는 가맹본부에 통지하고 승인을 얻은 후 영업개시 전까지 교육비를 부담하고 교육을 이수하고 본 가맹점营业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대행, 위탁 등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운영권을 대행하거나 위탁할 경우 반드시 당사에 사전 통보하고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행 및 위탁자는 당사가 정한 소정의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8. 경업 또는 겸업금지, 영업시간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 또는 겸업금지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기간 중 전국에서 자신 및 제 3 자로 하여금 당사의 허락 없이 백두상회와 동종업종(타사 가맹점, 독립점포 및 가맹본부 경영을 포함한다)을 경영하여서는 안됩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기간 중 가맹점 시설 내에서 당사의 사전 동의없이 백두상회 이외의 영업활동 및 사업체 운영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계약종료 후 2 년 내 대한민국 전 지역 내에서 당사의 사전 서면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 3 자의 명의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백두상회의 영업비밀이 침해되는 행위, 즉 백두상회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가맹점사업자에게 금지되는 경업금지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과일 및 야채 등 신선품(생물, 냉동 등)을 판매하는 업종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백두상회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상호 협의하여 정함	공휴일 포함 주6일 영업 원칙(일요일휴무)

- ①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2일이상 휴업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당사와 사전 협의한 경우는 예외로 휴무일을 별도협의 지정할 수 있습니다.
- ② 귀하가 특정일 또는 일정기간 동안 점포를 열지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 사전에 당사에게 그 사유를 서면(문자 등과 같이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매체 등)으로 통지하고 당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사실을 3 일전부터 매장 입구에 게시하고 [백두인] 온라인 지점 페이지에 고객이 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합니다.
- ③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④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 ⑤ 상권에 따라 영업시간과 영업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체결시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⑥ 다음 아래 각 호의 사유로 당사에 서면으로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합니다.
 - 가. 심야 영업시간대(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매출이 그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직전 3개월 동안 영업손실이 발생하여 귀하가 서면으로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하는 경우
 - 나. 귀하가 질병의 발병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하는 경우

3) 권장 종업원 수 및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장 근무 여부

권장 종업원 수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장 근무 여부
귀하는 효율적인 가맹점 운영과 소비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2 인 이상의 상주 인원을 유지하여야 함.	가맹점사업자가 매장에 근무하도록 권장하지만 필수적으로 근무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음

* 귀하는 자신의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종업원 등에 대하여는 자신의 책임과 부담으로 확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의 선택에 따라 필요한 경우 귀하의 해당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당사가 정보공개서 등에서 제시 및 밝히고 있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후 귀하의 사업장에 투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위의 인력 채용교육관리 등은 당사의 인력관리지침에 따라야 합니다.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귀하는 가맹점 점포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점포의 위생 및 청결을 유지함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과 브랜드 이미지를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당사가 정한 규정 이외의 품목 취급 여부, 상품의 보관 상태(냉장고 및 비품 보관 상태 등), 위생상태, 회계관리 등 매장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점검 및 지도·관리·감독하고 그 결과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비고
매장 청결	담당자 매장 방문→청결도 확인 →가맹점방문기록표 작성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완료	수시	
제품의 표준화	담당자 매장 방문→매뉴얼 준수 및 사입 체크 →가맹점방문기록표 작성→완료	수시	
POS 사용	담당자 매장 방문→POS사용 상태점검→가맹점방문 기록표 작성→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완료	수시	

9. 광고 및 판촉의 조건과 비용 분담 기준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가맹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광고(브랜드광고, 상품광고 등을 포함한다)를 총괄하며 당사의 경영적 판단과 결정에 의하여 광고에 사용되는 소재와 매체, 횟수, 시행일자 및 기간 등의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절차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공동 광고	브랜드광고	광고비의 50%	광고비의 50% /가맹점사업자 수	광고 계획 공고→ 가맹점의 광고참여 여부 결정→ 가맹점부담액 제시(광고1개월 전)→ 제시받은 날로부터 2주일 내 납입
	상품광고 등			
공동 판촉	가맹점 모집광고	100%	-	-
	행사에 따라	기획비용 부담	제작비용 부담	행사 계획 공고→ 가맹점의 행사참여 여부 결정 가맹점 부담액 제시→ 행사에 따른 분담금 납입
	달라짐	기획, 제작 비용 이외는 협의		

*브랜드 및 상품광고와 공동판촉은 전체 가맹점의 매출활성화를 위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참여 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라 광고는 50%이상, 판촉은 70%이상의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그

비용부담에 관하여 동의를 얻은 경우 당사는 전체 가맹점주에게 광고비(판촉비) 분담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판촉의 경우 70%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을 때는 동의한 가맹점사업자만 참여하는 분리 판촉행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당사와 별도로 사전약정을 체결한 가맹점사업자만을 대상으로 광고 및 판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당사 및 가맹점사업자들 간에 가맹점사업자간 광고 분담비율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는 그에 따르는 등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기의 비용으로 자기의 영업지역 내에서 당사와 별개로 광고·판촉활동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판촉활동 등을 위한 팸플렛, 카다로그, 쿠폰 등의 내용은 브랜드의 통일성 및 이미지 유지를 위하여 당사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며, 당사의 사업에 손상을 끼칠 수 있는 판촉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가맹점사업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영업지역 내에서 광고를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광고의 계획과 문안, 기타 광고와 관련된 세부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당사의 사업에 손상을 끼칠 수 있는 과장광고나 비방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광고/마케팅 활동 내역 및 분담금 집행은 별건(특약)계약에 따릅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에 필요한 각종 정보 및 자료들을 제공할 수 있으며,

가맹점사업자는 당사가 제공한 또는 운영상 알게 된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이나 계약종료 후에도 제 3자에게 어떠한 목적으로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그 직원, 기타 관계자 등에 의한 영업비밀의 의무위반에 대하여도 당해 행위자와 함께 관리감독상의 공동책임을 부담합니다.

본 계약 종료 전후를 불문하고 가맹점사업자가 법령 또는 법원, 정부기관의 정당한 명령에 의하여 공개할 의무가 있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그 공개 전에 당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의 허락없이 교육 및 훈련 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당사의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복사, 대여, 공개 등 일체의 누설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그 임직원, 종업원, 대리인 및 기타 가맹점 운영에 관여하는 자로 하여금 위 각 항과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도록 합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

당사와 귀하는 가맹계약의 양 당사자로서, 당사는 귀하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위약벌을 청구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위약벌 이외에 당사 또는 귀하에게 추가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입은 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당사가 귀하에게 제공하는 가맹계약서의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약벌 사유	관련 계약조문
귀하가 계약기간 내 또는 계약 종료 이후 제 17 조(비밀유지의무) 규정을 위반한 경우 위약벌로 금삼천만원(₩30,000,000)을 지급하여야 하며, 제 18 조(경업 또는 겸업금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최초 적발시 금오백만원(₩5,000,000)을 지급하고 최초적발시점 기준 1 개월 뒤부터 시정조치완료 시점까지는 매월 금일백만원(₩1,000,000)씩을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가맹계약서 제33조 제1항
귀하가 당사에게 제공받은 별도문서에 기재된 제 22 조 제 1 항 및 제 2 호의 품목에 대하여 제 23 조 제 1 항 제 1 호 내지 제 3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자점매입한 경우, 당사에게 위약벌로서 자점매입금의 10 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33조 제2항
귀하가 품질요구품목을 당사의 승인 없이 변경한 경우 귀하는 당사에게 위약벌로 금오백만원(₩5,000,000)을 지급하여야 하며, 위반 시정 시까지 1 일당 금일십만원(₩100,000)의 위약금을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33조 제3항
귀하가 제 31 조 제 2 항 및 제 5 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가맹점의 운영을 일방적으로 무단 중단·폐점 처리하거나 당사가 사용을 허락한 영업표지를 사용하지 않는 점포로 운영 또는 양도한 경우 귀하는 당사에게 위약벌로 금삼천만원(₩30,000,00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33조 제4항
귀하가 제 32 조 계약종료후의 조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귀하는 당사에게 위약벌로서 계약 종료일로부터 1 일 당 금일십만원(₩100,000)씩 의무의 준수 및 조치까지 계속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33조 제5항
제 1 항 내지 제 5 항에 의한 위약벌 이외에 당사 또는 귀하에게 추가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입은 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3조 제6항
당사 또는 당사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귀하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는 이를 배상한다.	제33조 제7항
귀하의 가맹점 운영과 관련하여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당사 또는 당사의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하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33조 제8항
동조의 위약벌 규정은 당사 또는 귀하의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합니다.	제33조 제9항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가맹점 오픈 절차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예상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내 용	소요기간	비 고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054-241-2211) 또는 방문 - 인터넷 홈페이지	-	IV.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영업개시이전 부담 금전지급 방법 참조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 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정보공개서 제공 인근 10 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계약서 제공 14(7)일 이후 계약	
가맹 계약 및 계약금 지급(예치포함)	- 가맹 계약 체결 - 가맹계약서 1 부 교부 보관 - 우리은행에 가맹금 예치 또는 가맹본부 피해보상보험가입	1 일	

점포 계약	- 점포입지 선정 - 점포개발 착수 - 상권분석	필요시 실시	
점포실측/설계	- 매장 내. 외부 중심선 기준 실측/ 평수 계산(소수점 첫째 자리)	3 일	
도면 작성	- 인테리어 / 별도 / 추가공사 도면협의	5 일	
인테리어 공사	- 인테리어 공사 실시	30~40 일	
기자재 및 소품설치	- 기자재 및 소품 설치	5 일	
교육	- 교육 - 아르바이트교육, 점주교육	5 일	
오픈	- 오픈 리허설(담당자 판단 후 오픈 결정) - 오프닝 행사(담당자 판단)	D-day	

*상기 일정은 개별사정에 의하여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14 일 후에서 7 일 후로 단축됩니다.

2. 분쟁해결 절차

당사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가맹거래사의 자문 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소송은 가맹점사업자의 주소지나 가맹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상호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점포환경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사의 점포환경 개선 요구가 있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비고
-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 간판교체 비용 - 인테리어 공사 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 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	--	--	--	--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과 관련하여 별도의 판촉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고
가맹본부	계약이행, 표준화, 가맹점 별 시장조사·판촉, 가맹점의 경영상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분석 및 지도	가맹본부가 개별 가맹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필요시 가맹점 방문 → 가맹점 현황 분석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 후 그 결과 및 개선방안 서면 제시	가맹본부 부담	필요시
가맹점사업자	계약이행, 표준화, 가맹점 별 시장조사·판촉, 가맹점의 경영상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분석 및 지도	가맹점사업자 특별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 후 그 결과 및 개선방안 서면 제시	가맹점사업자 부담	요청시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별도의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하여 경영상 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아래 지원내용 이외에도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사정 등을 감안하여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정책	주요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내용	비고
해당없음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1) 개점 전 교육 프로그램

당사는 백두상회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점 전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주 요 내 용	교 육 방 식	기 간	비 고
신규교육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소양 서비스 마인드 기술적 지식 배양 서비스 제고 매출증대 방법	실습교육, 집단강의	가맹계약 체결 후 개업하기 이전까지 이수하여야 함	필수교육

*상기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점 전 교육훈련 종료 시 평가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추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때 추가교육에 따른 추가교육비용은 귀하의 부담으로 합니다.

*당사가 정한 교육 및 훈련과정을 이수하지 아니 하는 자는 귀하의 가맹점 관리자로 근무할 수 없습니다.

2) 개점 후 교육 프로그램

당사는 효율적인 백두상회 가맹점 운영·관리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점 이후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주 요 내 용	교 육 방 식	기 간	비 고
신제품교육	신제품 추가로 인한 서비스 교육	개별 또는 집단강의	개별협의	필수교육
수시교육	가맹점통지사항 및 의견수렴	개별 또는 집단강의		필수교육
특별교육	가맹점사업자의 요청 내용	개별교육		선택교육
재교육	가맹점관리 및 운영	개별교육		필수교육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교육훈련의 최소 이수해야 할 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교육훈련에 미 참여 및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오픈 연기 및 지연될 수 있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원/VAT포함)	비고
개점 전 교육	5일	2,200,000	최초 계약 시 이수
신제품교육	개별협의	신제품 추가로 인한 서비스 교육	필요 시 실시
수시 교육		영업방침, 행정조치에 따른 소집교육 기본 교육 무료, 특수 사항은 실비 청구	
특별 교육		가맹점사업자에게 교통비 등의 실비 추가 청구	
재교육		일정 자격 미달 가맹점에 실시되는 교육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실비 청구	

3.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주체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주체는 가맹점사업자입니다. 다만, 사정에 따라 당사와 사전협의한 경우에는 타인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4. 교육·훈련 불참 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가맹점사업자 및 매장근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점 전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개점이 지연될 수 있으며 개점 이후 전체적으로 실시되는 교육에 교육 대상자가 불참할 경우 가맹점운영권 제한 사유 및 계약 갱신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을 체결한 이후 귀하는 가맹본부에서 기본이수교육 및 귀하의 가맹점 현장에서 리허설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기본이수교육은 계약체결이후 1개월 이내에, 리허설교육은 기본이수교육을 받은 이후 1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정한 기간 내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사유가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때에는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IX.에 기재된 정보는 양도인 백두상회(신월성점)의 자료입니다.

1. 바로 전 사업연도 직영점 목록 및 주소

연번	지역	직영점명	주소
1	대구	백두상회 본점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원로 151, 1 층(월성동)

2. 바로 전 사업연도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년, 개월)

2023 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1 년	

3. 바로 전 사업연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과 그 산정기준

(단위: 천원, VAT 미포함)

2023 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기준
807,419 천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상의 매출액

끝

별첨 1 물품구입 및 임차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